

2023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일 시 : 2023년 1월 31일, 14:30~14:58

●장 소 : 강동KDW웨딩홀 4층 회의실

●참석자 :

이천우(서울), 신득성(부산), 박민수(대구), 김대용(인천), 이현진(대전)
박경석(울산), 권혁재(세종), 서정복(경기), 박승용(강원), 이재현(충남)
노승찬(충북), 임종안(전남), 최동훈(전북), 엄득웅(경북), 강만순(제주)
심완보(초중고연맹), 이대성(대학연맹), 김태환(실업연맹) **이상 18명**

*불참: 광주, 경남

사회(선찬중 전무이사) : 지금부터 대한유도회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성원보고

사회(선찬중 전무이사) :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전체 대의원 20명중 18명이 참석하여 본회 정관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II. 개회선언

의장(조용철 회장) - 본회 정관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한유도회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III. 국민의례

IV. 회장 인사

(조용철 회장님 인사말 낭독)

V. 전차회의 결과 보고

- 2022년도 정기대의원총회는 2022년 1월 27일(목) 10시 30분에 재적 대의원 19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 보고사항으로
 1. 각종 규정 개정 결과 보고
 2.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3. 감사보고
- 심의사항으로
 1. 정관 개정 승인의 건
 2. 이사 증원 승인의 건
 3. 2021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 승인되었습니다.또한, 2번 심의사항의 승인과 함께, 증원된 이사의 선임에 대한 권한을 회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기타의견으로 '전남유도회 전용체육관 건립 현황'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있었습니다.
- 회의는 오전 10시 55분에 폐회하였습니다.

강원(박승용 대의원) 유인물을 미리 살펴봤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접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체 대의원- 원안대로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접수

VI. 보고사항

1. 각종 규정 개정 결과 보고

지난 2022년 11월 6일에 열린 제3차 이사회와 2023년 1월 14일에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각종 규정 개정 관련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경기인 등록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승단심의위원회 규정입니다.

경기인 등록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제6조의2(경기인의 교육) 조항 신설
 - 교육이수 내용 신설 및 근거 조항 명시
- 제8조(등록신청), 제9조(제출서류 등) 조항 통폐합 및 자구 수정
-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조항 추가
 -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규정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체육단체'를 '체육회 관계 단체'로 중복 문구 수정 등
- 부칙 조항 신설
 - 규정 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일에 따른 부칙 신설 및 적용례 명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주요 개정 내용은

- 징계기관이 충분한 조사 및 증거확보를 통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23조의2)
-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관한 징계처리 규정 신설(제25조 제8항)
- 징계시효의 명확화(제25조의2제1항)
- 시·도종목단체 1차 징계에 대한 재심의 기관에 대한 예외규정(제26조 제4항)
- 확정된 징계에 대한 구제 종류, 심의 요건 등 개정(제32조)
-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권익 침해 사안 특별규정' 삭제(제39조)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승부조작, 편파판정' 징계기준 강화
- 징계에 대한 감경기준 수정 및 추가

승단심의위원회 규정 주요 개정 내용은

- 제20조(실기심사 응시연한) 6단의 실기심사 응시 소요연한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제21조(서류심사 응시연한), 제25조(평가미달자의 소요연한) 8단의 서류심사 응시 최소점수를 기존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
- 제27조(특별승단 및 특별심의위원회) 특별승단 관련 규정 신설 및 특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추가입니다.

강원(박승용 대의원) 보고사항 1,2,3안은 유인물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접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체 대의원- 원안대로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접수

2.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지난 1월 14일에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동트는 동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를 포함한 16개의 국내대회와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10개의 국제 대회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문경 그랜드슬램 대회를 국내에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승단심사 4회, 유도지 발간 4회,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상임심판 운영 사업, 장학 사업, 아시안게임 임원 파견 사업, 유도인 인권증진 사업, 스포츠 이벤트 안전 경영 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이 있으며, 선수강화훈련으로는 국가대표 강화훈련 및 해외전지훈련, 후보/청소년/꿈나무 선수 합동훈련 및 청소년국제대회 파견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본회 예산은 아시안게임 파견으로 2022년 예산 대비 8천 7백여만원이 증가한 56억 4백여만원이며, 2023년 말에는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법인기금, 자체기금 과 실금의 전액 사용 예정으로 2022년 말과 동일한 64억 1천 9백여만원의 기금 적립금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안대로 접수

3. 임원 보선 결과 보고

2022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위임으로 의결된 이사 추가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4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추가로 선임된 이사는 이연이, 윤남수, 오철수, 최동환 이사 총 4명이며, 이로써 본회 이사 정원은 종전 29명에서 33명이 되었습니다.

- 원안대로 접수

4. 감사결과 보고

행정감사(신특성) :

2022년도 사업부문에 대한 감사결과, 큰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도 사업부문에 대한 감사결과,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동트는 동해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를 제외한 12개의 국내대회를 정부의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최하였고,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10개의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및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을 파견하였음.

1. 2021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 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완료하여, 유도 선수 뿐 만 아니라 유도인 전체가 인권보호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을 통하여, 유도인 인권 증진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음.
- 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지도자와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 개최지인 중국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아시안게임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23년으로 연기되었으나, 선발이 확정된 선수들의 집중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을 우선 지원하고 있음.

2. 개선 및 건의 사항

- 가. '이태원 사고'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전국규모대회 개최 시 철저한 대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나. 1년 연기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회계감사(구본광):

2022년도 회계부문에 대한 감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유도회의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세입, 세출내역서가 정관 및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세입, 세출의 내용이 사단법인 대한유도회의 정관과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사단법인 대한유도회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6,355백만원은 대한체육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434백만원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442백만원은 공로연금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근직원에게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수당 부채 계상 및 지급에 대한 2021년 지적 사항의 조속한 처리와 공인인증서관리자와 출금담당자는 내부통제 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미사용통장의 경우 연말이전에 해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공시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의원- 원안대로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접수

VII. 심의사항

1. 정관 개정 승인의 건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 6089호(2022.12.29.)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알림 문서에 근거하여 지난 1월 14일에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서 의결돼 상정된 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 자율성 강화
 - 임원 구성시 재적임원수에서 생활체육관계자를 20%, 비경기인을 20% 이상 포함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제22조 제3항)
 - 시도종목단체 회계감사 자격 완화(제32조 제3항)
 - 기본재산 체육회 보고사항 삭제(제40조 제4항)
- 책임성 강화
 - 임원에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반영(제23조 제1항)
 - 시도종목단체 간 임원 겸직 제한(제23조 제4항)
 - 시도체육회 관리단체 임원의 자격 5년간 제한(제26조 제1항)
- 선거제도 개선
 - 심판을 선거인에 포함(제19조 제3항)
- 규정 명확화
 - 사업 범위에 지도자 추가(제4조 제1항)
 - 총회 대리인 통보 기한 연장(제7조 제3항)

- 긴급한 사유인 경우 임시총회의 안전통지 기간 단축 허용(제8조)
- 회계감사의 자격 명확화(제22조 제6항)
- 대한체육회 관리 시스템에 임원 현황 등록 명시(제22조 제6항)
- 임원 임기의 기산 규정 명확화(제25조 제2항)
- 정관 개정 관련 향후 추진 계획
 - 대한체육회 사전검토 요청 절차 진행('23.01.16.~)
 - 대한유도회 정기대의원총회 안전 상정 및 승인 절차 진행('23.01.31.)
 -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및 승인 절차 진행('23.02.01.)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본 정관 개정(안)은 대한체육회 검토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며, 추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구수정 등 추가적인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박승용 대의원) : 정관 개정은 대한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체 대의원- 원안대로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포함)

2. 감사 선임의 전

본회 정관 제22조(임원의 선임) 제6항, 제25조(임원의 임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감사 두 명의 임기가 총회 전날인 어제부로 종료되어 새로운 감사 두 명을 선임해야 하며, 행정감사는 대의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고,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감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회계감사는 연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의장(조용철 회장) : 본회 재산상황과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아주실 책임자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서정복 대의원) : 감사를 가장 잘 할 수 있고 모든 행정을 잘 알고 있는 강원도 박승용 대의원님을 행정감사로 추천합니다.

전체 대의원- 동의, 재청

의장(조용철 회장) : 다음은 회계감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구본광 감사님께서 연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체 대의원- 동의, 재청

- 박승용 대의원을 행정감사로, 구분광 회계사를 회계감사로 선임

3.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 정관 제38조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거 7명의 위원이 추천되었는데, 추천대상자는 법률전문가로 최주필, 박혜진, 인권전문가로 이윤영, 스포츠분야경력자로 박종혁, 윤지섭, 조성욱, 이재학입니다.

전체 대의원- 원안대로 동의, 재청

- 추천대상자 7명 전원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4. 2022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지난 1월 14일에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2022년도 사업 및 결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계속된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동트는 동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를 제외한 12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10개의 국제대회 파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사업 역시 '코로나-19'의 확산 및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심판 및 경기운영규정 강습회, 4회의 정기승단심사, 4회의 유도지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했고,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및 꿈나무선수 합숙훈련을 포함,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과 국내전지훈련을 예정대로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결산부문은 세입부문에서 기금 등 체육회 지원금 31억 3천 9백여만원, 자체 15억 9천 3백여만원, 총 47억 6천 3백여만원의 세입이 있었고, 세출부문에서 기금 등 체육회 지원금 31억 3천 9백여만원, 자체 16억 6천 8백여만원, 총 48억 3천 8백여만원의 세출이 있었으며, 7천 4백 3십여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64억 1천 9백여만 원이며, 기금적립금을 포함한 협회 보유액은 79억 2천 8백여만원입니다.

강원(박승용 대의원) : 앞서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님이 이상 없다고 결과 보고를 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체 대의원- 원안대로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VIII. 기타사항

부산(신득성 대의원) : 우수선수들의 타시도 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운동특기자로 입학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학생으로 입학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 학생은 유도선수 이적동의서를 해당 소속 유도회 회장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2023년도에 모 공고 선수가 입학식도 안 했는데 이적동의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선수 학부모가 대한유도회에 민원을 넣어 대한유도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실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적하려는 시도의 회장님과 두 번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산시 교육청에 우수선수 이적동의서에 대해 사전에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이적동의서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한유도회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학부모가 한 번 더 인권위에 올리면 최선을 다해 분명히 뿌리를 뽑겠습니다. 대한유도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조용철 회장) : 이 문제에 대해서 선찬종 전무이사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선찬종 전무이사) :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의원총회 전에 다른 시도에서도 건의가 들어왔던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어렵게 키운 선수들이 타 시도의 특정 학교로 이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한유도회에서도 교육청이라든가 변호사, 대한체육회의 자문을 받아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뒤 있을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때 시도전무이사들하고도 의논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타 시도지부나 학교에서 학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천우 대의원) : 위장전입을 빼고 부모가 이사를 해 합당하게 이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적이 돼야 하는 게 맞고, 신득성 대의원님 말씀처럼 힘들게 키운 학생들을 뒤에서 스카웃 작업을 해 데리고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진출해 가는 시도 회장님과 이적을 해줘야 하는 시도 회장님 선에서 이적 사유를 철저히 검토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신득성 대의원) :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해서 학교를 전학했을 경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하면 행정자치부 법률에 의해서 그 학생은 원래대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부산시유도회에서 1년 전에 1,500만원을 들여 꿈나무를 키워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까지 거뒀는데 가장 우수한 선수를 모 학교에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유도인으로서나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총대를 메고 타 시도에 가 있는 선수들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 전부 원상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조용철 회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한유도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인권위에 문제 제기를 하면 안 해결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김태환 대의원) : 먼저,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한유도회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오늘 2023년도 출발하는 시점에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게다가 계묘년 시작과 함께 포르투갈에서 열린 대회에서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고 국위를 높인 것에 대해 2023년 조짐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아시안게임도, 세계선수권대회가 있고 내년에는 올림픽까지 있는데 대한유도회와 시도유도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영광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조용철 회장) : 감사합니다. 한국유도가 안창립, 조구함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세대교체를 통해 신진 선수들을 키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 계신 대의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 노력을 해서 우리 유도가 효자종목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X. 폐 회

의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기록 : 과 장 홍 창 신 (인)

확인 : 사무처장 강 동 영 (인)

제38대 집행부
제4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3년 1월 14일, 13:00~13:20
- 장 소 : 강원, 동해시체육회 회의실
- 참 석 자 : 조용철, 박용조, 신의식, 선찬중, 옥치일, 서윤석, 유희권
이용호, 김용하, 안현석, 배형정, 황선학, 서영호, 이윤환
조정복, 최창석, 오철수, 윤남수(18명)

*불참자 : 김동욱, 백락광, 김기석, 현석환, 김양호, 최 원
김광섭, 이경근, 유국상, 변석휴, 김재훈, 조민선
전기영, 이연이, 최동환(15명)

I. 성원보고

선찬중 전무이사: 지금부터 대한유도회 제38대 집행부 제4차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본회 재적이사 33명 중 1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II. 개회선언

조용철 회장: 본회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한유도회 제38대 집행부 제4차 이사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III. 국민의례

IV. 회장인사

V. 전차 회의 결과

- 2022년도 제38대 대한유도회 제3차 이사회는 2022. 11. 6.(일) 13시 40분, 충남 보령종합체육관 내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29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 보고사항으로
 1.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에 대한 서면 결의 결과 보고
 2. 각종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
 3. 기타사업 등 3건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하여 주셨고,
- 심의사항으로
 1.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의 건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3. 승단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4. 유도인 인권보호 규정 제정의 건
 5. 이사 추가 선임의 건
 6. 업무추진비 사용의 건 등 6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 기타의견은 없었으며, 신임 이사로 보선된 윤남수 이사 소개 및 인사가 있었습니다.
- 회의는 13시 55분에 폐회하였습니다.

조정복 이사: 사전에 검토한바 이상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접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제청)

- 원안대로 접수

VI. 보고사항

1.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2년 11월 6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 개최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승단심의위원회 1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서면결의 1회가 있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단심의 위원회
 - 2022.11.30.(수): 제4차 승단심사
- 스포츠공정 위원회
 - 2023. 1. 9.(월): 2022년 체육발전 유공자 추천 및 규정 개정 검토

배형정 이사: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접수

2. 기타 사업 결과

2022년 11월 6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 진행된 기타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국제대회 파견 결과,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고,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IJF월드마스터스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제4차 승단심사가 11월 30일에 청주유도회관에서 실시돼 총 5,503명이 합격하였고, 국내 최초로 스포츠안전재단이 실시한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서를 획득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혁신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복 이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검토한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접수했으면 합니다.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접수

VII. 심의사항

1.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 6089호(2022.12.29.)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알림'에 의거하여, 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개정(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 자율성 강화
 - 임원 구성시 재적임원수에서 생활체육관계자를 20%, 비경기인을 20% 이상 포함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제22조 제3항)
 - 시도종목단체 회계감사 자격 완화(제32조 제3항)
 - 기본재산 체육회 보고사항 삭제(제40조 제4항)
 - 책임성 강화
 - 임원에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반영(제23조 제1항)
 - 시도종목단체 간 임원 겸직 제한(제23조 제4항)
 - 시도체육회 관리단체 임원의 자격 5년간 제한(제26조 제1항)
 - 선거제도 개선
 - 심판을 선거인에 포함(제19조 제3항)
 - 규정 명확화
 - 사업 범위에 지도자 추가(제4조 제1항)
 - 총회 대리인 통보 기한 연장(제7조 제3항)
 - 긴급한 사유인 경우 임시총회의 안건통지 기간 단축 허용(제8조)
 - 회계감사의 자격 명확화(제22조 제6항)
 - 대한체육회 관리 시스템에 임원 현황 등록 명시(제22조 제6항)
 - 임원 임기의 기산 규정 명확화(제25조 제2항)
 - 정관 개정 관련 향후 추진 계획
 - 대한체육회 사전검토 요청 절차 진행('23.01.16.~)
 - 대한유도회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및 승인 절차 진행('23.01.31.)
 -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및 승인 절차 진행('23.02.01.)
- ※ 관계 조항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정관 제52조(정관 변경)

안현석 이사: 이미 메일로 검토를 했고 이상이 없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복 이사: 심의 안건 전체를 사전에 봤기 때문에 1-6번까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후 대의원총회 상정기로 함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 20호(2023. 1. 2.)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에 의거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징계기관이 충분한 조사 및 증거확보를 통하여 스포츠평정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23조의2)
-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관한 징계처리 규정 신설(제25조 제8항)
- 징계시효의 명확화(제25조의2제1항)
- 시·도 종목단체 1차 징계에 대한 재심의 기관에 대한 예외규정(제26조 제4항)
- 확정된 징계에 대한 구제 종류, 심의 요건 등 개정(제32조)
-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권익 침해 사안 특별규정' 삭제(제39조)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승부조작, 편파판정' 징계기준 강화
- 징계에 대한 감경기준 수정 및 추가입니다.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3. 승단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대한유도회 2022년 제4차 승단심의위원회(2022.11.30.)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승단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제20조(실기심사 응시연한) 6단의 실기심사 응시 소요연한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제21조(서류심사 응시연한), 제25조(평가미달자의 소요연한) 8단의 서류심사 응시 최소점수를 기존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
- 제27조(특별승단 및 특별심의위원회) 특별승단 관련 규정 신설 및 특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추가입니다.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4. 2022년도 표창대상자 선정의 건

2022년도 우수선수, 지도자, 팀 공로자에게 대한유도회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선정 대상은 2022년에 개최된 각종 국제대회와 국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 단체와 각 시도지부 및 연맹에서 추천받은 유공자이며, 지난 1월 9일 스포츠평정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서면 의결을 거쳐 안건 상정되었습니다.

선정 인원은 최우수선수 1명, 우수선수 22명, 우수단체 10팀, 지도상 10명, 공로상 23명(모범심판 3명 포함)입니다.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5. 2022년도 사업 및 결산(안) 심의의 건

2022년도에는 계속된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동트는 동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를 제외한 12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10개의 국제대회 파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사업 역시 '코로나-19'의 확산 및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심판 및 경기운영규정 강습회, 4회의 정기승단심사, 4회의 유도지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했고,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및 꿈나무선수 합숙훈련을 포함,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과 국내전지훈련을 예정대로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결산부문은 세입부문에서 기금 등 체육회 지원금 31억 3천 9백여만원, 자체 15억 9천 3백여만원, 총 47억 6천 3백여만원의 세입이 있었고, 세출부문에서 기금 등 체육회 지원금 31억 3천 9백여만원, 자체 16억 6천 8백여만원, 총 48억 3천 8백여만원의 세출이 있었으며, 7천 4백 3십여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64억 1천 9백여만 원이며, 기금적립금을 포함한 협회 보유액은 79억 2천 8백여만원입니다.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6.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023년도에는 동트는 동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를 포함한 16개의 국내대회와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10개의 국제 대회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문경 그랜드슬램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승단심사 4회, 유도지 발간 4회,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상임심판 운영 사업, 장학 사업, 아시안게임 임원 파견 사업, 유도인 인권증진 사업, 스포츠 이벤트 안전 경영 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이 있으며, 선수강화훈련으로는 국가대표 강화훈련 및 해외전지훈련, 후보/청소년/꿈나무 선수 합동훈련 및 청소년국제대회 파견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본회 예산은 아시안게임 파견으로 2022년 예산 대비 8천 7백여만원이 증가한 56억 4백여만원이며, 2023년 말에는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법인기금, 자체기금 과실금의 전액 사용 예정으로 2022년 말과 동일한 64억 1천 9백여만원의 기금 적립금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후 대의원총회 상정기로 함

7. 과실금 사용 승인의 건

금년도 본회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관리지침'에 의거 본회 법인화기금,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자체 기금의 당해연도 과실금 전액을 협회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 용도는 인건비, 운영비 등 기본 경비와 대표팀 국외전지훈련비 등 국고보조사업 수행 부족 경비, 선수훈련 및 경기운영에 필요한 용구, 용품구입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금액은 사업 집행 시 내부결재 문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말 현재 진흥기금은 43억 2천 3백 6십 5만 8십 3원이, 법인화기금은 약 20억 3천 1백 1십 2만 6천 4백 3십 2원이, 자체기금은 6천 4백 5십 8만 6천 2백 5십 8원이 적립돼 있으며 2023년에 전체 기금에서 발생할 과실금은 1억 2천 3백여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정 이사: 과실금 사용 승인의 건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VIII. 기타사항

선찬중 전무이사: 김진도 회장님이 계실 때 이사회에서 전무이사 판공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키로 했으나 알아봤더니 판공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안 썼습니다. 지금까지 유도회 임원들에 한해 경조사비가 있을 때 화환이라든가 경조사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유도회 회장님은 우리나라 유도 전체를 관할하고 계셔서 청첩장이라든가 부고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화환이나 경조사비를 전에 이사회에서 승인됐던 판공비 안에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동의. 재청)

조용철 회장: 전무이사 판공비를 유도인들을 위해 쓴다고 하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여러분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무이사 의견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철 회장: 문경그랜드슬램과 관련해 IJF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IJF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실사에서는 5성급 호텔 여부, 숙소와 경기장과의 거리 등을 보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보고 안되면 그 아래 대회라도 추진해서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찬중 전무이사: 한 가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서’ 를 대한유도회에서 획득했습니다. 지난 번 보령회장기대회에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고 안전과 관련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용철 회장: 집행부 이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IX. 폐 회

회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대한유도회 제38대 집행부 제4차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기록 : 과 장 홍 창 신 (인)
확인 : 사무처장 강 동 영 (인)